

과업내용서

2021년 도시재생 뉴딜 충무지구
군항문화페스타 문화예술 거버넌스 운영 용역

2020. 4.

목 차

I. 과업의 개요	1
II. 과업내용	2
III. 과업의 일반사항	5
IV. 과업 성과품 작성	9

1. 과업명

- 2021 군항문화페스타 문화예술거버넌스 운영 용역

2. 과업의 배경 및 목적

- 주민이 기획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 경험 부여를 통한 지역문화 주체성 확보와 주민주도 문화기획 조직 육성과 발굴
- 충무지구 재생사업의 주요 거점공간을 활용한 장소성 회복으로 장소-공간-사람이 함께한 문화기능 재생

3. 과업의 범위

가. 공간적 범위 :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 구역

나. 시간적 범위(과업기간) : 계약일로부터 2021.12.31

다. 금액적 범위 : 금 160,000,000원(금일억육천만원, 부가가치세 포함)

라. 내용적 범위

- 축제학교 기획방향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운영
- 축제학교 운영 인력 구성을 비롯한 운영 전반(축제 추진단, 현장 기획자 강사진 등)
- 지역협력 운영을 위한 협의체계 마련(축제추진단) 및 운영
- 축제 홍보전략 수립 및 추진
- 만족도조사 등을 통한 평가 및 제언

1. 과업프로그램 내용

프로그램		주요내용
매개+교류+교육	축제학교	- 주민주도형 축제인 군항문화페스타를 주도할 기획 인제 발굴 및 양성 · 진해축제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분은 기획자가 지역에 진입 및 주민들과 교감 할 수 있도록 함 · 참여기획자의 역할 정의 필요 함 - 축제 전의 단계로 자주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 생성차원으로 인식 함 · 기획자-주민 교류와 주민이 직접 내용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함 - 주민+기획자의 활동장려와 후속 사업화 형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 - 현장 중심의 강의와 멘토링을 고려한 교육방식 제안
축제	군항문화페스타	- 축제 학교를 통해 발굴된 주민 및 기획자 주축으로 축제 추진단 구성 - 축제학교에서 발굴된 기획안을 사업화 및 축제 콘텐츠로 구성 - 축제학교를 통해 발굴된 기획사업들은 축제로 수렴 및 발산

2. 세부 과업 내용

1)(기획운영)축제학교 기획 방향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운영

- 축제학교 주요 프로그램 구성 및 세부 실행방안 제안
 - 기존 관주도를 탈피한 소도시차원의 축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기존 축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
 - 축제 이전의 다양성 넘치는 주민모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
- 축제학교 인력구성 중 기획자 역할 제안
 - 축제학교 참여 기획자(강사진)는 창원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기획자를 2명 이상으로 두며 세부 역할 명시
 - 인력 구성원은 센터와 협의하여 명단 구성
 - ※컨소시엄 단체 및 기획자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기재 하도록 함
- 축제학교 코스는 참여-아이디어-의제-과제에 따라 시민을 행위의 주체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도록 설계

2) (축제운영)군향문화페스타 인력 구성을 비롯한 운영 전반

- 축제 운영 공간 확정에 따른 계약 및 운영 관련 제반사항 추진
 - 주행사장소: 충무지구 활성화 지역 범위 내(충무동, 여좌동 일대)
 - 축제 운영 업무를 위한 축제기획단 구축 및 운영(운영기간: 7월 ~ 12월)
- 공간 세부 구성(안) 제안 및 공간 구성, 운영(구성, 제작, 설치, 철거 등)
 - 사업별 운영특성에 따른 공간 구성(공연, 전시, 체험 등)
- 축제학교의 기획·모임을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를 축제와 엮어서 운영
- 무대, 섭외, 진행 등 프로그램에 따라 전문 스태프가 필요한 요소에서는 분야별 스태진 구성 및 운영, 집행(전기, 음향, 중계, 제작, 설치 등)
- 각 행사별 세부항목, 시간, 내용, 연출 이미지, 동선을 포함한 세부 추진도안 및 구성안 제작
- 운영을 위한 총감독 및 인력 배치 및 관리 계획
 - 프로그램별 공간 배치 및 운영 관리 체계 수립: 총감독, 홍보, 무대 분야별 감독 등 원활한 축제 추진을 위한 분야별 전담인력 확보
- 축제 운영전 충무지구 뉴딜 주민협의체 대상 축제 사업 안내
 - 축제 운영 설명회, 추진현황 보고 등
- 안전사고 대비책 수립
 - 행사 전체 보험 가입 및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
- 상기 외 축제운영에 필요한 운영사항 전반

3) (축제추진단)축제 협력 문화예술 거버넌스 협의 체계 마련 및 운영

- 축제 거버넌스의 역할인 추진단 구성 계획안 수립
- 축제 거버넌스 정기 회의 추진 및 센터관계자 필시 참석
- 축제학교의 과제 진단 및 모색 후 군향문화페스타 운영안 수립
- 축제추진단은 실질적 교류 및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차원의 협의체계로 인식

4) (주민콘텐츠)최종 결과물 지원 방안

- 축제학교를 통해 만들어진 주민제안형 프로그램은 현 과업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여 기획사업화 및 축제로 전환
 - 주민제안형 프로그램은 1건당(1팀) 공모사업 5백만원 이내로 지원
 - 현예산 및 과업의 범위에서 30%내에서 예산 편성 하도록 함

5) (홍보 및 기록물 제작)축제 전반에 대한 홍보 전략수립(계획) 및 추진

- 성공적 축제 운영 및 홍보를 위한 디자인 전략 계획 수립
 - 축제 메인 디자인 개발(디자인 전문성 확보 업무)
 - 응용 디자인 개발(프로그램별, 장소별, 참여자별 등)
 - 홍보인쇄물, 공간운영 사인물 등 전략적 디자인물 제작 및 구성
- 홍보물 제작 및 배포
 - 리플릿, 포스터, 현수막 등 홍보인쇄물 제작 및 배포
 - 동영상 제작 및 사진기록
- 축제 준비 및 추진, 진행에 관한 전 기간을 영상 및 사진, 녹취 기록

6) (평가 및 제언)추후 운영 평가 회의 실시

1. 일반사항

- 과업 운영 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금액 정산은 ‘창원시 예산편성 기본 원칙 및 회계처리기준’에 따라 이루어진다.
- 과업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수정·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, 과업수행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-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·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·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자가 제출하는 성과물에 대한 사용 권리는 전부 충무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귀속되며 이에 대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, 활용할 수 없다.
-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저작권, 지적재산권 및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, 과업 수행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.
- 기초 자료를 포함한 모든 작업물의 저작권은 충무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귀속된다.
-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, 과업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,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.

2. 수행방법

- 단계적 개선을 전제로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추진한다.
- 사업 계획수립 및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주민과 기획자,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.
-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활동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- 사업 수행 시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계획한 실행과정이 담겨야 하며, 수급자가 임의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정도에서 수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.
- 사업 수행과정에는 주민의 의견, 역할,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, 실제 실행과정에서 주민이 존재하여야 한다.
-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주민설명회, 보고회 등을 위하여 “발주기관”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, 자료 제출 등 주민 설명회, 보고회 등에 수반되는 내용은 “계약대상자”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“계약대상자”는 본 과업의 특성상 주민설명회 등 다수 실시가 필요할 시 “발주기관”과 협의하여 참여 및 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.
- 과업수행은 아래의 원칙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.
 - 사업운영의 구체적 방향성과 운영방안을 주민모임과 함께 수립하여야 하며 역할분담을 통해 운영하여야 한다.
 - 지역의 기획자와 주민 공동체 구성 등 문화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운영하며, 본 용역에서는 기획자·주민·지역 문화자원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수행 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.
 - 단일한 지역의제 및 기존 주민모임 중심의 활동이 아닌 다양한 지역의제와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, 모임 자체에

개방성을 갖춰 주민모임이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.

- 과업내용 수행 시 본 원칙 이외의 내용은 발주부와 협의하여 진행한다.

3. 용역기간 조정

-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.
 - 여건변화에 따라 과업 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한 경우
 -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되는 경우
 - 기타 “발주기관”이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

4. 보안사항

-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.
- 과업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,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모든 자료, 계획내용, 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과업 중 폐기물은 파쇄 처리해야 하며,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사업기간 및 사업종료 후 모든 과업 성과물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.

5.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

-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해약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 -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
 -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 수행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
 -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
 -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

6. 특기사항

- 과업수행 시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,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실현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.
-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토론회의, 설명회, 관계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,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 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.
-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.
-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,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

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
V

과업의 성과품 작성

1. 과업수행 착수 및 수행보고

- 과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.
- 과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착수신고서
 - 과업참여자 구성사항 및 조직편성, 인원투입계획
 -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
- 착수신고서 제출 이후 진행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해야 한다.
 - 추진실적 및 현황보고가 담긴 월별결과보고서 제출
 - 참여자 출결 관리
 - 주민 의견 및 운영 관련 제안
 - 과업수행기간동안 책임자(담당자)가 출석하여 월별 보고 실시
 - 성과보고회 개최 : 계약 만료 10일 전까지

2. 보고서 및 성과품

- 축제학교 운영 프로그램, 추진단 회의,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, 각 단계별 작업과정, 중간평가·보고과정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아카이빙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다.
- 모든 성과품 일체는 센터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
-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

협의하여야 한다.

- 사업완료 후 과업내용을 수행한 자체평가를 진행해야 하며, 추후 발주처와 논의하여 일정을 공유한다.
-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
 -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,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.
 - 사진·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,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·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.
- 성과 결과물 제출목록(최종원고 및 도서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)

구 분		제출형식	제출수	비 고
1. 과업 최종보 고서	- 축제 세부 실행계획서	자체형식 책자 센터형식	1부 300부 1부	
	- 과업 과정을 담은 아카이빙 책자			
	-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			
2. 사진 및 영상자료 기초데이터		USB	1개	
3. 사진 및 영상 편집 자료 최종본				
4. 최종 제작물 및 관련 자료 등 일체				

※ 성과품의 제출부수 및 규격은 과업수행 중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